

현장실습학기제운영규정

5-1-40

규정번호 5-1-40
제정일자 2018.12.10
최근개정 2026.2.6
개정차수 11차 개정
관리부서 현장실습지원센터

[규정명칭 변경 및 전면개정 2021.8.18.]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현장중심의 실무 교육을 통하여 학생의 현장 적응력 및 실무 능력 향상을 위한 현장실습학기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현장실습 수업방법"(이하 "현장실습학기제"라 한다)이란 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와 현장실습기관 간 산학협력 관계를 기반으로 실시되는 대학 밖으로 연장된 경험학습을 위한 수업방법을 말하며, 표준 현장실습학기제와 자율 현장실습학기제로 구분한다.
2. "표준 현장실습학기제"란 현장실습학기제 중 산학협력법 제11조의3제1항의 표준화된 운영기준으로 운영되는 현장실습학기제 형태를 말하며, 표준 현장실습학기제의 영문표기는 'Co-op'(Cooperative education으로 한다.
3. "자율 현장실습학기제"란 현장실습학기제 중 표준 현장실습학기제와 달리 운영되는 현장실습학기제로 운영하는 형태를 말한다.
4. "현장실습기관"(이하 "실습기관"이라 한다)이란 학생의 실무 교육 및 실습 등 현장실습학기제의 운영이 가능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연구기관, 산업체 등의 기관을 말한다.
5. "현장실습생"(이하 "학생"이라 한다)이란 전공 관련 실무 경험을 제공받기 위해 현장실습학기제에 참여하는 학생을 말한다.
6. "현장실습지원비"(이하 "실습지원비"라 한다)란 산학협력법 제11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에 따라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및 수행과 관련하여 실습기관에서 학생에게 지급하는 비용을 말한다.
7. '현장실습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는 우리대학 현장실습학기제의 전문적이고 체계적 관리를 위해 운영하는 조직을 말한다.

제 3 조 (적용 대상) ① 현장실습학기제는 전공심화과정을 포함한 전체 학과를 대상으로 한다. 단, 야간 과정 및 산업체 위탁교육생은 제외한다.(개정 2022.04.08.,2023.06.19)

② <항 삭제(2022.04.08.)>

③ 취업을 전제로 한 이론, 실습 운영프로그램, 교내 또는 산업체 위탁 실습 운영프로그램을

명지전문대학 규정 / 5-1-40 현장실습학기제운영규정

통해 학점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 현장실습 교과목 필수이수 대상자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운영지침을 따른다.

④ 감염병 등에 따른 위기단계 발생 시 대학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 2 장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기준

제4조(현장실습학기제의 구분) 현장실습학기제는 통합전공 과정으로 운영하며, 기간에 따라 4주 이상의 표준 현장실습학기제와 자율 현장실습학기제로 구분하고, 실습내용에 따라 전공형과 우리대학 핵심역량 강화와 융복합기술능력 배양을 위한 융합형 현장실습학기제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6.02.06.)

제 5 조 (현장실습생) ① 현장실습학기제는 해당 학기를 등록한 재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복학생 및 제18조에 의거한 사유로 현장실습이 유보된 학생에 한하여 학기 중에 실시할 수 있다.

② 현장실습생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이 규정 및 지침에 따른 절차와 기준
2. 실습기관의 안전관리규정과 기준
3. 현장실습학기제 중 습득하게 된 실습기관의 기밀사항 누설 금지 등

③ 현장실습생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보장받는다.

1. 현장실습학기제 교육 및 실습수행에 관한 지도를 받을 수 있는 권리
2. 현장실습학기제 중 보건 및 산업재해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와 사고 및 재해 시 보상받을 권리
3. 현장실습학기제 중 본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현장실습과 관련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을 권리
4. 이 규정에 따른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기준 또는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계획과 다른 사항의 발생 시 조치 받을 권리

제 6 조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원칙) ① 현장실습학기제는 학생이 향후 관련 산업에 종사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지식·기술·태도를 습득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② 현장실습학기제는 산학협력을 기반으로 해당 전공분야의 실무능력 향상을 위해 학생 전공과 관련된 실무 실습 과정으로 운영한다.

③ 현장실습학기제는 다음 각 호의 수업 요건을 갖추도록 한다.

1. 현장실습학기제에 대한 교육과정 편성 및 교과목 개설
2. 현장실습학기제 교과목 수강신청, 등록절차 및 이수과정
3. 실습기관 현장교육담당자 지정 및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계획
4. 현장실습학기제 운영에 대한 점검 계획
5. 출결 및 평가 관리 등 학점 부여 근거와 기준
6. 그 밖에 현장실습학기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

명지전문대학 규정 / 5-1-40 현장실습학기제운영규정

제 7 조 (현장실습지원비) ① 산학협력법 제11조의3제3항에 따라 실습기관은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참여 학생의 실습수행이 원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습지원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실습지원비는 학생에게 직접 금전으로 제공되는 지원금으로, 현물(식사, 기숙사, 통근버스 등)로 제공되는 경우는 실습지원비에 포함하지 않으며, 학교를 통한 장학금 형태로 학생에게 지급하여서는 안 된다.

③ 산학협력법 시행령 제13조의2제2항에 따른 실습지원비 산출 기준이 되는 단위 실습시간 수 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주 단위 실습시간 수 : (일 실습시간 수 × 주 실습일수 + 1주 1일의 유급휴일로 처리되는 일 실습시간 수)
2. 월 단위 실습시간 수 : (주 단위 실습시간 수 ÷ 7) × (365 ÷ 12) 값의 소수점 이하 올림 값
3. 직무수행 실습시간 비율 : (1 - 직무 관련 교육시간 비율)의 소수점 둘째자리 값(셋째자리 올림 값)

④ 산학협력법 시행령 제13조의2제2항에 따른 실습지원비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주 단위 실습지원비 :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시되는 시간급 최저임금액과 주 단위 실습시간 수, 직무수행 실습시간 비율을 곱한 금액 이상
2. 월 단위 실습지원비 :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시되는 시간급 최저임금액과 월 단위 실습시간 수, 직무수행 실습시간 비율을 곱한 금액 이상
3. 실습기간이 주 또는 월 단위로 편성되지 않은 남은기간 날의 수(기간)에 대하여는 주 단위 실습지원비를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실습지원비를 지급한다.(개정 2024.7.24.)

⑤ 연장·야간 실습시간에 대한 실습지원비는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시되는 시간급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금액과 연장·야간 실습시간을 곱한 금액 이상으로 한다.

제 8 조 (현장실습학기제 관련 경비 등) ① 대학은 현장실습학기제를 위하여 관련 산업체와의 협의, 학생인솔, 순회지도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금액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② 대학은 현장실습학기제 수행 지원을 위해 현장실습학기제 이수자에 한하여 실습기관의 실습지원비 외 별도의 지원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현장실습학기제 학생들에 대한 산업체 평가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금액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④ 계절학기 현장실습학기제 교과목 성적인정에 따른 수강료는 면제할 수 있다.

제 9 조 (학생 보호) ① 대학은 현장실습학기제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 및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교육, 성희롱 예방 교육 등을 실시한다.

② 실습기관에서는 현장실습학기제에 참여하는 학생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3조에 따른 「현장실습생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 범위」(고용노동부 고시)에 의하여 산

명지전문대학 규정 / 5-1-40 현장실습학기제운영규정

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습기관에서는 산재보험 가입 여부를 증명하는 서류를 가입 후 1주일 이내에 대학 측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함께 대학에서는 현장실습학기제 중 상해 등의 사고로 인한 생명·신체상의 손해 및 배상책임 등의 상황에 대비하여 현장실습학기제 참여 학생을 피보험자로 하는 상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④ 표준 현장실습학기제는 1일 기준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과 1주 기준 1일 이상의 휴일, 실습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 학생이 1개월 기준 1일의 휴일을 활용할 수 있도록 휴게시간과 휴일이 보장되어야 한다. 이 경우 1주 기준 1일의 휴일과 1개월 기준 1일의 휴일은 유급휴일(공휴일 포함)로 한다.

⑤ 자율 현장실습학기제의 경우 실습 시간 및 기간을 고려하여 실습기관과 휴게 및 휴일에 관하여 협의하여 실시한다.

⑥ 현장실습학기제 기간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해당 사항에 대한 소요 일수를 제4항 및 제5항의 휴일 외 추가적인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한다.

1. 예비군 훈련 등의 공적 의무 수행일
2. 본인 및 직계존비속의 결혼, 사망 등의 경조사일
3. 질병 및 상해 등으로 인한 입원일 등. 다만, 질병 및 상해로 인한 실습수행 목적 달성 및 지속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실습기관, 학생, 대학 간 협의를 통하여 중단 및 복교 등의 조치 실시

⑦ 기계작동 및 실험기반 실습 등의 경우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반드시 실습기관의 현장교육 담당자의 지도 및 참관 하에 실시되어야 한다.

⑧ 제26조에 따른 평가 시 실습기관에서는 자체 기준 및 규정 등으로 학생을 평가하거나 그 결과에 대한 징계, 불이익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없다.

⑨ 현장실습학기제에 참여한 학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학교에 관련 사항을 알려야 하며, 해당 학교는 신속히 관련 사항을 확인 후 실습기관을 대상으로 시정 등을 요청하거나, 현장실습학기제 중단 및 학생 복교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실습기관에서 현장실습학기제 인정 범위를 벗어난 업무를 주거나 지시·강요하는 경우
2. 실습시간 및 기간 등의 기준을 위반한 경우
3. 실습지원비를 지급하지 않거나 기준 미만으로 지급하는 경우
4. 산업안전·보건과 위생, 성희롱 및 재해 상의 문제가 발생했거나, 관련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5. 그 밖에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조건의 임의 변경, 조정이 발생하는 경우 등

제 3 장 현장실습학기제 실시 및 관리

명지전문대학 규정 / 5-1-40 현장실습학기제운영규정

제10조(표준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① 현장실습학기제는 1학년 하계 계절학기부터 재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인턴십학기제(학기제현장실습)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한 재학생을 대상으로 한다..(개정 2023.06.19., 2026.02.06.)

1. 2년제 과정: 3학기 이상 이수자(신설 2026.02.06.)
2. 3년제 과정: 5학기 이상 이수자(신설 2026.02.06.)
3. 학사학위전공심화과정 : 1학기 이상 이수자(1년제), 3학기 이상 이수자(2년제)(신설 2026.2.6.)

② <삭제(2026.02.06.)>

③ 표준 현장실습학기제는 학기별 수업일수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주 단위의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기간을 편성하여 운영한다.

1. 실습기관의 근무제 형태를 기반으로 1주간 5일을 기준으로 연속적으로 운영한다. 다만, 실습기관의 근무제 형태가 1주간 4일 또는 6일인 경우에 한하여 1주간 4일 또는 6일을 기준으로 연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2. 실습기관의 근무제 형태가 1주간 4일 미만이거나, 대학에서 실습기관의 근무제 형태와 다르게 운영하고자 할 경우는 자율 현장실습학기제로 운영하여야 한다.

④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표준 현장실습학기제는 실습기관의 전일제를 기반으로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 8시간을 기준으로 운영한다. 다만, 실습기관의 전일제 기준이 1일 6시간 이상 8시간 미만인 경우에 해당 전일제 기준으로 운영할 수 있다.
2. 제3항제1호 및 제4항제1호에 따라 표준 현장실습학기제는 1주간 40시간을 기준으로 이를 초과하지 않도록 운영하되, 실습 수행 과정상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여 실습기관이 학생의 동의를 받아 1주간 최대 5시간을 한도로 실습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1주간 5시간을 넘고 최대 12시간을 한도로 실습시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제6항에 따른 근로계약 체결형태의 표준 현장실습학기제로 운영하여야 한다.
3. 제3항제1호에 따라 1주간 4일 또는 6일을 기준으로 운영되는 경우 제4항제1호 및 제4항제2호에 따른 운영시간 기준을 지켜 운영한다.
4. 표준 현장실습학기제는 오후 10시부터 이튿날 오전 6시까지의 야간에는 운영할 수 없다. 다만, 실습기관의 근무제 및 전일제 형태에 따라 야간에 운영 되어야 하는 경우에 한하여 대학과 실습기관은 운영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이를 협의한 후 학생이 야간에 운영될 수 있음을 미리 알아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실습기관에서는 제15조에 따른 협약 체결 외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중 발생할 수 있는 근로 문제 예방 등 학생보호 조치 목적 등으로 해당 표준 현장실습학기제에 대해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계획서(현장실습학기제 운영지침 별지 제1호 서식) 제출 시 대학과 협의 후 진행한다.

⑥ 제5항에 따른 근로계약은 이 고시에 따른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기준과 범위에서만 근로계약

명지전문대학 규정 / 5-1-40 현장실습학기제운영규정

체결이 가능하며,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범위와 다른 업무를 부여하거나 다른 기준으로 체결할 수 없으며, 이외 사항은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등 노동관계 법령에 따른 기준을 지켜야 한다.

⑦ 외부기관의 지원을 받아 진행되는 인턴십학기제의 경우에는 해당 지원기관의 기준과 절차를 따를 수 있다.(신설 2026.02.06.)

제 11 조 (국외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국외 실습기관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표준 현장실습학기제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따라 운영하되, 그 밖에 사항은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조항에 따라 운영한다.

1.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인정기준 서식의 구성 요건을 포함한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계획서 및 출석·평가표로 운영할 수 있다.
2.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인정기준 서식의 구성 요건을 포함한 국외 실습기관과 협의한 문서 또는 서신 등으로 운영할 수 있다.
3. 실습지원비는 해당 국가의 최저임금 또는 제7조 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국가에 최저임금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임금 수준 및 물가 비교 등을 고려한 기준을 세워 시행할 수 있으나, 국내 실습기관에서 국외 지사 등으로 파견하는 형태 등 실습지원비의 소득 처리가 국내에서 이뤄지는 경우의 국외 표준 현장실습학기제는 국내·국외 실습지원비 기준을 비교하여 높은 금액 기준을 적용한다.
4. 국외 표준 현장실습학기제는 해당 국가에서 정한 비자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제 12 조 (자율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① 제10조에 따른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기준과 달리 대학의 자율적 기준으로 운영하는 자율 현장실습학기제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자율 현장실습학기제의 운영 기간 및 시간 기준은 제10조 범위에서 대학과 실습기관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③ 자율 현장실습학기제로 운영할 경우의 실습지원비는 직무 관련 교육시간 비율에 따라 제7조의 실습지원비 기준을 적용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실습지원비를 지급하지 않는 형태로 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대학에서는 전공 교과체계에 따른 관련 실습의 필요성이 요구되는 경우에만 실시하고, 실습기관에서는 전공과 관련된 교육 환경 및 여건을 갖추어야 한다.
2. 대학에서는 관련된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학생은 해당 과정을 수강 및 등록하여 수업의 하나로 운영하여야 한다.
3. 일련의 과정은 지식이나 기술의 습득 등 학생의 교육목적 및 학사 일정에 따른 학업 성취도를 충분히 제공하여야 하며, 운영 전 구체적인 학습사항 및 일정이 확정되고 이를 학생이 충분히 확인 후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4. 일련의 과정 및 학생이 수행하는 사항은 학생에게 유익이 되어야 하며, 학생의 활동(과정 및 결과물 포함)으로 해당 실습기관에 실질적이거나, 즉각적인 유익이 없어야 한다.

명지전문대학 규정 / 5-1-40 현장실습학기제운영규정

5. 일련의 과정 및 실습기관에서는 학생을 소속 근로자의 대체 인력 또는 추가 인력으로 활용하거나, 학생에게 실습기관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미한 사항을 포함한 일상 업무 수행을 시켜서는 안 된다.
6. 실습기간 동안 학생은 실습기관의 현장교육담당자의 지속된 지도 아래 관찰 및 간접 체험 등 직무 체험(Job Shadowing) 형태를 주된 과정으로 하여 참여하여야 하고, 제한적으로 관련 업무를 직접 체험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접적인 업무의 체험은 학생의 학습적 유익에 한정되어 일회성 체험 형태로 운영될 수 있으나,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될 수 없다.
7. 일련의 과정에 대하여 실습지원비가 지급되지 않는 조건으로 운영된다는 것을 실습기관, 대학 및 학생 상호간에 사전 동의되어야 한다.
8. 실습지원비를 지급하지 않는 자율 현장실습학기제는 일주일 기준 15시간 미만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기간은 2개월 이하로 실시하여야 한다.
- ⑤ 그 밖에 자율 현장실습학기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 및 기준 등은 운영지침에 따른다.

제 13 조 (신청 및 학생 선발) ① 현장실습학기제에 참여하고자 하는 학생은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현장실습지원시스템을 통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② 학생 선발의 경우 취업과의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산업체 직무를 분석하고 해당 산업체에 적합한 학생을 선발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은 현장실습학기제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정규학위과정 외의 외국인 유학생 및 교환학생 등
2. 산업현장 근로자 등을 위한 산업체위탁 교육과정 및 재직자특별전형과정 등의 학생
3. 기타 교육부에서 지정하여 공지하는 제외 대상 학생 등

제 14 조 (실습기관 선정) ① 학과장(지도교수)은 학과별 교육과정과 관련한 현장실습기관의 선정을 위하여 사전에 산업체와 현장실습의 내용에 대하여 충분한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② 실습기관은 다음 각 호의 형태로 현장실습학기제에 참여할 수 있다.

1. 대학 주도형 : 대학에서 현장실습학기제에 참여할 실습기관을 직접 발굴하거나 모집하여 운영하는 형태를 말한다.
2. 실습기관 주도형 : 실습기관에서 현장실습학기제에 참여할 대학을 지정하거나 모집하여 운영하는 형태를 말한다. 다만, 둘 이상의 대학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실습기관에서는 실습기간 및 실습지원비 등의 여건·지원 사항에 있어 같은 기준을 적용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③ 대학 주도형은 표준 및 자율 현장실습학기제로 운영할 수 있으나, 실습기관 주도형은 표준 현장실습학기제인 경우만 운영할 수 있다.

④ 실습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현장실습학기제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는 운영계획을 갖추고 있을 것
2. 학생의 보건·위생, 안전을 보장할 수 있을 것
3. 현장실습학기제에 필요한 시설·설비·물품 등을 갖추고 제공할 수 있을 것
4. 학생의 전공지식 및 실무능력 배양이 가능하도록 전공과 관련된 직무수행 기회 부여 및 관련

명지전문대학 규정 / 5-1-40 현장실습학기제운영규정

된 교육, 지도가 가능할 것

5.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및 학생 지도·관리를 담당하는 현장교육담당자를 배치할 것

6. 그 밖에 교육부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 기준을 준수하고, 각 대학에서 정한 기준을 갖출 것

⑤ 실습기관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보장받는다.

1. 현장실습학기제 수행에 적합한 학생을 선발하는 권리
2. 현장실습학기제 수행에 관한 학생 교육 및 지도를 할 수 있는 권리
3. 학생 또는 대학으로 인하여 운영 기준 및 계획과 다르게 운영되는 등 현장실습학기제 운영에 문제점이 발생할 경우 운영 거부 또는 중단할 수 있는 권리

⑥ 현장실습학기제를 실시하는 각 학과는 실습생의 전공 분야, 현장실습프로그램의 적절성, 실습기관 교육담당자의 전문성, 현장실습 시설·설비의 적합성 및 후생복지 여건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의거 실습기관을 선정한다.

1. 산학연계 체제 결연산업체
2. 역량기반 교육과정 직무와 관련이 있는 업체
3. 역량기반 교육과정 직무가 아니더라도 학생의 현장실습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업체
4. 기타 근로자의 인적 구성과 시설·설비 및 후생복지 등이 현장실습을 실시하기에 적합하다고 학과장이 인정하는 산업체

제 15 조 (협약) ① 현장실습학기제 협약은 총장과 실습기관장 명의로 체결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업무상황에 따라 지원센터장과 실습기관의 부서장 명의로 체결할 수 있다.

② 대학은 현장실습학기제를 시작하기 전 또는 시작일까지 대학, 학생, 실습기관 간 협약을 체결한다. 이 경우 표준 현장실습학기제는 현장실습학기제 운영지침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고, 자율 현장실습학기제는 대학에서 서식을 달리할 수 있다.

③ 실습기관 및 대학은 제2항에 따른 협약 및 확정된 운영계획서에 근거하여 현장실습학기제를 운영한다.

④ 실습기관, 대학 및 학생의 사정에 따라 협약 변경 및 해지가 필요한 경우 해당 사항을 반영하여 협약을 변경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⑤ 현장실습 협약 사항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현장실습기관명(장소) 및 실습기간
2. 휴게일(휴일) 및 실습지원비 등
3. 현장실습생에 대한 출석 및 평가
4. 현장실습 기간 중 학생의 보건·위생과 산업재해의 예방
5. 기타 현장실습 교육에 필요한 사항

제 16 조(현장실습생의 사전교육) 지원센터 및 교과목 담당교수 또는 지도교수는 현장실습학기제 실시에 앞서 현장실습생을 대상으로 현장실습학기제 기준 및 방법, 준수사항, 학점인정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사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23.06.19.)

명지전문대학 규정 / 5-1-40 현장실습학기제운영규정

제 17 조 (재해보험가입) 현장실습에 참가하는 학생을 각종 재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제9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실습기관은 산재보험을 대학은 상해보험을 가입하여야 한다.

제 18 조 (순회지도) ① 산업체의 현장실습교육 실태 파악과 학생지도를 위하여 현장실습기간 중 담당지도교수는 주기적으로 순회지도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학과장(지도교수)은 실습생의 작업환경, 근무상태 등을 점검하고 실습생과 실습기관의 애로 점 및 요구사항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 19 조 (실습 내용 변경 등) ① 실습기관에서는 현장실습 운영 중 실습기관의 사정으로 현장 실습 내용, 기간 및 계획 등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대학 측에 통보하고 대학 및 학생의 동의 하에 변경하여야 한다.

② 실습기관에서는 학생의 무단결석, 실습지도 거부 및 불성실한 태도 등으로 인해 현장실습학기제 운영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 사유를 대학 측에 알리고 대학과의 협의 하에 현장실습학기제를 중단 또는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실습기관의 사정으로 중단 또는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학생의 현장실습학기제 이수에 문제가 없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 20 조 (현장실습의 유보) 현장실습학기제 기간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총장의 허가를 얻어 현장실습을 유보할 수 있다.

1. 질병(의사진단서 제출)
2. 관혼상제(음·면·동장 확인서 첨부)
3. 기타 총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 21 조 (현장실습학기제의 무효) ① 현장실습생은 실습기간 중 학교의 명예를 심히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학칙 제44조에 의거 처벌하며, 현장실습학기제는 무효로 한다.

② 현장에서의 무단결근은 현장실습학기제 기간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③ 학생이 지정 또는 허가받은 실습장소를 임의로 바꾸거나 거부 또는 중단한 경우에는 현장실습학기제를 인정하지 않으며 해당 실습기간은 무효로 한다.

제 4 장 국가재난 등에 대비한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제22조 (학생 안전 및 보호조치) 대학에서는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중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 등 국가재난 발생 시 재난 상황에 따라 실습기관과 협의하여 일시 중단 또는 복교, 휴학 등 학생 안전 및 보호에 우선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경우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일시 중단의 경우 현장실습학기제의 지속 운영 및 학점 취득 요건을 갖추는 범위에서 실시할 수 있다.
2. 복교에 따른 중단 시 대학 규정에 따른 학점 취득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 해당 현장실습학기제 교과목의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으나, 학점 취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대체실습 교과 등의 수강이 가능하도록 조치하거나, 학생이 희망할 경우 휴학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3. 질병, 재난, 군입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턴십을 계속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총장의 승인을 받아 인턴십을 중단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신설 2026.02.06.)

제 23 조 (재택실습) 재난 상황에도 불구하고 현장실습학기제 지속 운영 필요에 대한 실습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실습기관의 운영계획에 따른 실습기간(또는 일수)의 100분의 25 이하에 해당하는 기간(또는 일수) 범위에서 재택실습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재택실습 기간은 현장실습학기제의 출석일수로 인정한다.
2. 재택실습 실시 시 실습기관에서는 재택실습 실시의 필요성 및 운영계획 등이 포함된 공적문서를 작성하여 대학에 제출하여야 하고, 대학 및 학생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 실시할 수 있다.

제 24 조(대체 교과목 운영) 재난상황 및 폐업 등 현장실습 운영이 불가능한 상황에 따라 대체 교과목 수강을 통해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대체과목은 현장실습학기제 교과목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개정 2023.06.19.)

제 5 장 현장실습학기제 평가 및 만족도조사

제 25 조 (결과서류 제출) ① 대학에서는 현장실습학기제 평가기준을 실습기관에 안내하고, 실습기관에서는 해당 기준에 따라 현장실습생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며 그 결과를 현장실습학기제 출석부와 함께 대학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현장실습학기제를 이수한 학생은 현장실습학기제 종료 후 현장실습학기제 주간보고서, 현장실습학기제 종합보고서 등을 교과목 담당교수 또는 지도교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3.06.19.)

제26조(현장실습학기제 평가 등) ① 현장실습학기제 평가는 절대평가로 한다.

- ② 현장실습학기제를 완료한 학생에 대한 평가는 실습기관에서 작성한 평가표, 출석부, 지도교수의 평가 등을 기준으로 하여 교과목 담당교수 또는 지도교수가 100점을 만점으로 평가한다. (개정 2023.06.19.)

- ③ 현장실습학기제 성적은 인정자에 한하여 P(Pass)로 처리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점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1. 현장실습학기제를 중도 포기한 경우
2. 학점인정의 최소 기준 시간에 미달한 경우
3. 현장실습학기제 평가점수가 60점 미만인 경우
4. 학점인정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5.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지를 이탈한 경우(신설 2026.02.06.)

- ④ 인턴십학기제의 경우, 3항의 1호와 5호로 인하여 학점을 인정 받지 못한 학생은 향후 인턴십학기제 과정을 신청할 수 없다.(신설 2026.02.06.)

제 27 조 (만족도 조사) 현장실습지원센터에서는 현장실습학기제 종료 후 실습생 및 실습기관

명지전문대학 규정 / 5-1-40 현장실습학기제운영규정

을 대상으로 현장실습학기제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만족도 조사 분석 및 개선방향을 모색하여 이를 차기 현장실습학기제 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 6 장 현장실습학기제 지원체계 등

제 28 조 (현장실습지원센터) ① 대학은 현장실습학기제의 전문적이고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지원센터를 설치 및 운영한다.

② 현장실습학기제 시행 계획 수립, 관련 규정 제정·개정 등 현장실습학기제 시행 전반에 관하여 전체적으로 조정하고 관리하며, 다음 각 호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1. 실습기관 발굴 및 선정
2. 실습기관의 수요조사, 참여 신청 및 접수 관리
3. 학생 참여 신청 및 접수 관리
4. 참여 학생 대상 현장실습학기제 사전 교육
5.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자료 관리
6. 현장실습학기제 수행 점검 등에 관한 사항
7. 실습기관과의 업무 협의
8. 기타 현장실습학기제 운영에 필요한 행정 지원 등

③ 지원센터는 세부 운영계획서를 검토하고 실습기관과의 협의·조정을 통해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내용 및 계획을 확정된 후 시행하여야 한다.

④ 지원센터에서는 현장실습학기제 실시 중 제3항에 따른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여부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다.

제 29 조 (기타 사항)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교육부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을 준용하고,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은 현장실습학기제 운영지침으로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8년 1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8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을 2019년 7월 30일부터 시행하되 2019학년도 하계 계절학기부터 적용한다.

부 칙

명지전문대학 규정 / 5-1-40 현장실습학기제운영규정

이 규정은 2019년 1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0년 1월 14일부터 시행하되, 다만, 제3조제2항의 커뮤니케이션디자인과에 한하여 2020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0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0년 5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0년 12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전면개정)

이 규정은 2021년 8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2년 4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3년 6월 19일부터 시행한다.(제3조제1항, 제10조제1항, 제16조, 제24조, 제25조제2항, 제26조제2항)

부 칙

이 규정은 2024년 7월 24일부터 시행한다.(제7조제4항제3호, 제17조)

부 칙

이 규정은 2026년 2월 6일부터 시행한다.(제4조, 제10조제1항제1호·제2호·제3호, 제10조제2항·제7항, 제22조제3호, 제26조제3항제5호, 제26조제4항)